

울산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나1255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나12554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가소2316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형

변론 종결 2021. 3. 11.

판결 선고 2021. 4. 8.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가소2316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62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 29. 원고의 소개로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48154분의 1980 지분(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을 144,000,000원에 매수하고, 2015. 1. 29. 5,000,000원, 2015. 2. 10. 125,000,000원, 총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 대가로 주식회사 C으로부터 받을 수당 14,000,000원과 위 토지의 매매잔대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피고 대신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D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3. 19. 접수 제25402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와 함께 2015. 5. 20.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E로부터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325.3분의 415.7 지분(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을 212,433,000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F 토지 중 피고 가 취득할 3325.3분의 208.26 지분 대금으로 2015. 5. 12. 5,000,000원, 같은 달 22. 6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E로부터 받을 수당 8,625,000원과 위 토지의 매매잔대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피고 대신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6. 4. 접수 제55679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D 토지 및 이 사건 F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들에게 각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매도인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방식으로 피고를 대신하여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내지 차용금으로서 원고가 대신 지급한 22,625,000원(= 이 사건 D 토지 대금 중 14,000,000원 + 이 사건 F 토지 대금 중 8,6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자신의 실적을 위하여 매도인들로부터 지급받을 수당을 피고가 매도인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매매대금의 일부로 대신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이고,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가 매매대금 잔금을 대신 지급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리거나 부당이득한 바 없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다거나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무엇보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하였다는 차용증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F 토지의 매매를 권유하면서는 '원고가 1년 후 이 사건 F 토지 중 피고 지분을 1년 후 최소 평당 250만 원에 매도하게 해주고, 매도하지 못한 경우 원고가 피고의 대출에 따른 이자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계약 약정서(을 제2호증의 2)를 작성하였는데, 위와 같은 약정서는 따로 작성하면서도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지 않고 2회에 걸쳐 함께 22,625,000원이라는 큰 돈을 구두로 대여하기로 약정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또한 위 계약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의 매매대금이나 대출 이자 부담에 따른 손해를 원고가 보전해준다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보다 '원고가 수당을 스스로 포기하면서까지 이 사건 F 토지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한 2015. 5월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9. 8월까지 3년 이상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독촉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자신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계약약정서를 근거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자 원고가 이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고, 위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위 22,625,000원의 채권으로 상계 의사표시를 하지도 않는 등 그 전에는 이 사건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 반하여 원고는 이를 반박할 만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가 제출한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사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것으로서 쉽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형철

판사안복열

판사김현진

별지